



월간 기업금융분쟁 뉴스레터

2026.08.31

안녕하십니까, 법무법인(유) 세종 기업·금융분쟁그룹입니다.

저희 그룹은 기업상사 분쟁, 경영권 분쟁, 회생·도산, 금융 분쟁 및 기업형사사건 등 기업의 경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이슈에 대해 최고의 전문팀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
이번 기업금융분쟁 뉴스레터 8월호에서는 다음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.

- **주요 판결** : 2026년 7월 판례공보에 수록된 기업·금융분쟁 분야 대법원 주요 판결
- **이슈 소개** : 김동규 변호사의 '회생·파산 이야기' (제8편)
- **승소 사례 소개** : 기업·금융분쟁그룹의 최근 승소사례 안내

본 뉴스레터가 귀하의 업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.

1. 26년도 7월 판례공보 중 기업·금융분쟁 관련 주요 대법원 판결 소개

- ▶ **대법원 2026. 5. 8. 선고 2024다321829 판결 (key word : 주주명부, 명의개서, 명의개서 없는 주주권 행사의 예외, 주식양도담보)**
주식양수인(양도담보권자 포함)이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마치지 아니한 이상,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없고, 이러한 하자 있는 주주 지위를 전제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후속 주주총회결의 및 신주발행 역시 모두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
- ▶ **대법원 2026. 5. 20. 선고 2025다210073 판결 (key word : 사해행위취소, 파산재단, 재단채권, 강제집행)**
취소채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의 판결에 따라 사해행위로 일탈된 재산이 원상회복되었으나, 그 재산에 대한 취소채권자 등의 개별적 강제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된 경우,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을 취득한 채권자도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
- ▶ **대법원 2026. 7. 16. 선고 2026다202091 판결 (key word : 퇴임이사, 상법 제386조 제1항, 상법 제394조 제1항, 회사를 대표할 자, 감사, 이사 정원의 결원, 이사말소등기의 회복)**
법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하여 후임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를 가지는 상법 제386조 제1항의 퇴임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394조 제1항의 '이사'에 해당하므로, 그 퇴임이사와 회사 사이의 소에서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감사가 회사를 대표한다고 판단한 사례

2. 이슈소개

▶ 김동규 변호사가 들려드리는 회생·파산 이야기(8)

법무법인(유) 세종 기업금융분쟁그룹 도산팀 김동규 변호사입니다. 2003년부터 2024년까지 20여 년을 판사로 재직하면서 서울회생 법원 등에서 회생 및 파산 사건을 담당하며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2026년 한 해 매달 도산절차를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드리고자 하였는데, 업무에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. 남은 이야기들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.

“8호 : 도산해지조항과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확정에 대하여”

3. 승소사례 소개

기업·금융분쟁그룹이 수행하던 사건 중 최근 승소한 사례들을 소개드립니다.

- ▶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금안심대출보증과 관련하여 수탁 금융은행을 상대로 업무위탁협약 위반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, 은행을 대리하여 업무매뉴얼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범위에 대해 '초과 취급된 보증금액'으로 제한된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
- ▶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이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'피용자'에 해당하지 않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킨 사례

관련구성원

최창영

대표변호사

02-316-1947

cychoi@shinkim.com

문희춘

변호사

02-316-4051

hcmoon@shinkim.com

이원

변호사

02-316-4406

wlee@shinkim.com

최복기

변호사

02-316-1613

bgchoi@shinkim.com

이숙미

변호사

02-316-4016

smlee@shinkim.com

Copyright SHIN & KIM LLC. All rights reserved.